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논산시의회 의장 



2020년 9월 21일

논산시의회규칙 제2호

##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. 그러나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.
- ③ 의장,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.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, 불신임,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, 휴가,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.

-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” 를 “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,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” 로 한다.

제3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2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 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-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

-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-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
-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-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“긴급현안질문“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“질문“은 “긴급현안질문“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현행	개정안
<p><u>제37조의2(5분 자유발언)①~④&lt;생략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37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~④ &lt;현행과 같음&gt;</u></p> <p><u>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&lt;생략&gt;</u></p> <p><u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73조의2(시정질문)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에 대하여는 <u>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<u>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⑤ <u>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"긴급현안질문"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 보내야 한다.</p> <p>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하여 6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⑦ <u>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"질문"은 "긴급현안질문"으로 본다.</u></p>